

國民福祉向上과 더불어 增大되는 醫療需要 가운데 醫療保險의 擴大實施는 國民醫療需要를 점차 充足시키고 있다. 그러나 增大되는 醫療需要와 醫療質의 選好度에 비해 醫療機關의 發展은 現實情을 勘案한 醫療制度上的 各種問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本會는 이에 특히 病院諸稅面에 關心을 갖고 病院稅制欄을 마련하여 病院運營 發展의 一助가 되고자 한다.

相談：鄭 基 善

서울대병원 병원연구소 수석연구원  
공인회계사

柳 泰 鉉

공인회계사·正宇會計法人

(問) 醫療法에 의해 醫療法人을 설립할 時 保社部에서 요구하는 병상당 400만원중 일부를 土地(병원부지 이외의 土地)로 출연 (일정 기간후에 売却하여 出捐金化한다는 但書下) 한 경우 出捐된 土地의 売却에 따른 處分益에 대하여 特別附加稅가 과세되는지요? (경기도 S 병원)

(答) (1) 현재 保社部에서는 醫療法人의 신 규설립시 병원부지외에 병상당 400만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병상당 400만원을 현금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이나 다른 고정자산의 출연도 위와같은 但書下에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法人이 土地등을 売却한 경우에 處分益이 발생되면 特別附加稅가 과세되는데 特別附加稅의 非課稅 또는 免除에 관하여는 法人稅法 제59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上記條項 제 1 항, 제13호는 “社會福祉 事業法에 의하여 설립된 社會福祉法人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 社會福祉施設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醫療法人이 소유한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出捐을 목적으로 의료법인에 기부한 土地등도 売却時에 處分益이 발생한다면 課稅

對象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3) 이 問題는 의료법인 모두에 적용되며 앞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病院들에게도 적용될 문제이기 때문에 政府에 건의하여 關係條項을 삽입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問) 醫療法人등(財團法人, 社會福祉 法人 등)이 病院에서 발생한 所得(利益)의 일부를 法人의 固有目的事業인 宣教, 醫學研究 등에서 용되도록 기부한 경우에 損費로써 인정되는지의 與否와 이에 따른 問題點이 있는지의 與否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산I병원)

(答1) 원래 醫療法人등은 非營利法人으로서 公益事業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醫療法人등이 수행하는 여러가지 사업중 醫療業은 收益事業으로 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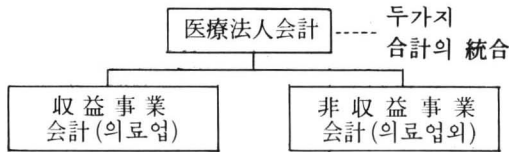
醫療法 제42조(附帶事業)를 보면 “醫療法人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附帶事業을 할 수 있다.

1) 醫療人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 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調查研究”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醫療法人의 會計는 收益事業인 병원이 있고 非收益事業인 研究나 教育事業이 있는 경우(財團法人등의 경우에는 宣教·獎學·

學術支援等 여러가지 非收益事業이 있을 수 있음) 아래와 같이 区分되는 것입니다.



즉, 수익사업에 대한 會計와 비수익사업에 대한 회계는 区分하여 행하게 되며 장부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法人의 會計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합쳐서 財務諸表를 만들면 되므로 法人만의 特定事業(예, 利子, 配当收入등)이 없는 경우에는 法人會計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例는 學校法人의 경우 볼 수 있는 바, 학교법인은 學校會計(校費·실험실습비·학도호국단비등을 費目別로 나누어 처리)와 收益事業인 의과대학부속병원·연극공연장·호텔 또는 營利法人과 같은 형태의 株式會社 등의 會計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가지 會計를 합쳐서 法人會計로 합니다. 學校法人의 경우에도 별도의 收入(예, 利子·配当收入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区分하여 나타내고 다른 두가지 會計와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條件下에서 수익사업인 의료업에서 발생한 所得을 비수익사업인 연구사업 등에 轉出한 경우에 이를 損費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 돈이 씌지돈인데 주머니만 달라졌다고 이를 損費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法人稅法 제18조나 同施行令 제42조 제16호의 “非營利法人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收益事業에서 생긴 소득을 그 法人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寄附金으로 본다는 規定에 의거하여 해석하면 損費處理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4) 그러나 위와같이 損費處理를 허용하여준

다고 하더라도 결코 영구히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해주지는 않는다는 規定이 相續稅法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相續稅法 제8 조의 2 (相續稅課稅額 不算入)를 보면 제1항 제1호에 계기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財産은 상속세과세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規定되어 있고 同施行令 제3조의 2 (公益事業)제2항 제11호는 “醫療法에 의한 醫療法人이 운영하는 事業”을 規定하고 있어, 의료법인이 收益事業에서 발생한 수입을 비수익사업에 지출한 것은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일단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同令 제7항 제2호를 보면 “公益事業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출연 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에 대한 法人稅……(中略)……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부터 1年內에 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 제8조의 2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위의 規定은 그 해석에 異論이 있으나 醫療法人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利益의 一部를 비수익사업에 전출시켰으나 비수익사업 부문에서 그 목적사업인 宣敎·學術·獎學 등의 목적으로 1年內에 80%를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法人稅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法人의 代表(理事長)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6) 非營利(公益)法人에 관한 例規通牒이나 判例등이 적은 관계로 앞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答辨을 할 수는 없으나 앞에서 열거한 法條文등의 趣旨는 비영리를 표방하여 脫稅를 막겠다는 것이므로 이 점은 유의하여 稅務上的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鄭 基 善)

〈題目〉修正申告 및 加算稅에 관한 質疑입니다(인천직할시 남구 J병원 경리부장).

〈問〉修正申告를 할 수 있는 法的根拠는 무엇입니까?

〈答〉國稅(관세와 지방세를 除外한 內國稅)에 관한 基本事項과 共通事項을 規定하고있는 國稅基本法 第45條는 다음과 같은 修正申告期限을 定하고 있습니다.

(1) 法人稅 및 附加價值稅: 法定申告經過日后 6個月內(豫定申告의 경우는 豫定申告經過後 3日內).

例 1: 法人稅의 修正申告, 期限(사업년도:

83. 1. 1~83. 12. 31경우)

期 限	自己調整計算書添附法人		外部調整計算書添附法人	
	一般法人	外部會計監査法人	一般法人	外部會計監査法人
決算確定期限	'84. 2. 14	'84. 2. 14	'84. 2. 29	'84. 2. 29
申告期限	'84. 2. 29	'84. 3. 15	'84. 3. 15	'84. 3. 30
修正申告期限	'84. 8. 29	'84. 9. 15	'84. 9. 15	'84. 9. 30

(2) 其他의 國稅경우는 法定申告期限 經過后 1月內입니다.

〈問〉修正申告를 할 수 있는 適格要件은 무엇입니까?

〈答〉法定申告期限內에 課稅標準申告書를 提出한 者이어야 함으로 所定期限內에 아예 提出하지 아니했던 者는 修正申告를 할 수 없습니다.

當初申告後 修正申告前에 法人이 合併 또는 相續에 의하여 納稅義務를 承繼한 경우는 修正申告 할 수 있다고 봅니다.

〈問〉修正申告 方法과 修正事項의 範圍는 어떠한지요?

〈答 1〉別紙第16号 書式인 “課稅標準 修正申告 및 追加自進納付 計算書”에 다음事項을 記載한 內容과 書類를 添附하여야 합니다.

1. 當初申告한 課稅標準과 稅額
2. 修正申告하는 課稅標準과 稅額
3. 其他必要한 事項
4. 當初申告書 사본 및 自進納付 計算書를

提出하여야 하는바 當初內容은 “赤書로 表記”하고 修正內容은 “黑書로 併記”하여야 하며, 其他 修正된 必要書類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答 2〉修正事項의 範圍는 當初 課稅標準作成時에 發生된 漏落, 誤謬는 勿論 當該申告書作成前에 이미 發生한 源泉的인 漏落도 誤謬도 修正事項의 범위에 포함 됩니다.

〈問〉修正申告의 効力에 따른 加算稅의 減免은 어떠한 內容이 있는지요?

〈答 1〉過少申告加算稅의 免除: 當初申告의 過少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加算稅를 수정신고된 範圍內에서 免除됩니다. 따라서 當初申告를 하지 않은 경우는 修正申告의 資格이 없으며, 修正申告에 의한 無申告加算稅가 免除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答 2〉重過少申告加算稅의 免除排除等

가. 法人稅의 경우는 法人稅法 第41條第1項 2호 단서에 의한 대통령령(제113조의 과소신고소득의 계산)에 해당하는 過少申告의 경우는 算出稅額의 30%를 賦課하는바, 同過少申告加算稅는 免除되지 아니함.

나.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稅務公務員이 調査에 差手한 것을 아는 경우로써 이때의 修正申告 加算稅는 免除되지 아니함. 이 경우 過少申告加算稅의 免除與否를 修正申告書 提出者의 內心的 主觀的 事實의 存在與否에 있게 규정한 것은 執行上 難點이 있다고 봅니다.

〈答 3〉無納付 過少納付加算稅의 輕減 修正申告와 함께 追加自進納付를 한者에 대하여는 ① 當初申告를 하였으나 稅額의 自進納付를 아니하였다가 수정신고와 함께 納付하는 경우와 ② 自進納付의 過少로 인한 加算稅는 50% 相當 加算稅를 輕減받을 수 있습니다.

〈答 4〉稅政協力義務不履行으로 인한 加算稅의 경우는 國稅基本法 第48條(가산세감면)에서 정하고 있는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加算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加算稅의 減免申請을 할 수 없습니다. (例: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불명가산세 등).

담당: 柳泰鉉